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4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 (2021.7.13.)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분야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 기간을 부여하여야

- 하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함(안 제16조).
- 마.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 바.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는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변동현황의 경우 매년 6월 및 12월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20조).
- 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법령위반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 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 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

카.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9조).

타.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명단 공표 여부,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31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전부개정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2021.7.13.)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나. 전부개정안의 입법 배경

- 최근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부정수급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해 복잡다양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방보조금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제정·시행됨(2021.7.13.).

- 기존의 지방보조금 관련 입법체계는 「지방재정법」 제2장의2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르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음.
-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 관리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강화,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됨.
- 한편, 동일한 내용의 전부개정안이 제10대 의회에 제출(2021.10.15.)된 바 있으나 임기종료(2022.6.30.)로 폐기되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2022.4.28.)되면서 법률 정비사항이 일부 반영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자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다. 주요사항 검토

(1) 입법체계

-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과 조문체계를 일치시키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2021.7.29.)과 유사한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4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거쳐 모두 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표준조례안에 없는 차등보조율의 적용(안 제4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안 제7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안 제17조), 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안 제25조) 등은 독자적인 규정임.

< 서울시 전부개정안과 현행 조례의 조문 구성 >

전부개정안		현행 조례		비고
조 항	조 제 목	조 항	조 제 목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보조대상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7조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신설(법 제4조)
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8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조	자치구의 부담의무	제9조	자치구의 부담의무	
제7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제6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9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9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신설
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20조	보조신청	
		제21조	교부결정	

제11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22조	교부조건	
제12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23조	교부결정 통지	
제13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24조	교부방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5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	지방보조금의 집행	
		제27조	용도와 사용금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1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16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29조	실적보고	
		제30조	정산검사	
		제31조	감독 등	
제17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			신설(법 제18조)
제18조	성과평가	제32조	성과평가	
제19조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신설
제2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4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신설(법 제22조)
제22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5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3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신설
제24조	명단 등의 공표			신설(법 제30조)
제25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신설(법 제35조)
제2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6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이의신청 등	제37조	이의신청 등	
제28조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30조	위원의 임기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3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회의 등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	위원의 해촉	
제33조	의견 청취 등	제16조	의견청취 등	
		제17조	실비보상	
제34조	수당			
제35조	운영세칙	제18조	운영세칙	
제36조	시행규칙	제38조	시행규칙	
부칙		부칙		

- 조례의 주요내용은 ▶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안 제16조), ▶ 회계 감사(안 제17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안 제25조) 등이 있음.
- 이하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독자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안 제3조)

- 안 제3조는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등 8개 분야로 정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음.
- 표준조례안은 조례로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분야 및 기준보조율의 범위(안 제3조)>

분야	하한선(%)	상한선(%)
사회복지	30	70
공원·환경	30	70
도로·교통	30	50
도시계획·주택정비	30	50
산업경제	30	70
도시안전	30	50
문화관광	30	70
일반행정	30	50

-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는 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시행규칙 [별표1] 에서는 94개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함.

<서울시 94개 사업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시행규칙)>

분야	소계	30~50%	60%	70%	80%	90%	100%	정액보조	차등보조
계	94	31	1	4	2	3	10	23	20
사회복지	46	18	1	1	2	3	6	10	5
공원환경	12	3	-	1	-	-	1	4	3
도로교통	7	2	-	-	-	-	-	1	4
도시계획 주택정비	4	3	-	-	-	-	-	-	1
산업경제	3	-	-	2	-	-	-	-	1
도시안전	2	2	-	-	-	-	-	-	-
문화관광	20	3	-	-	-	-	3	8	6

- 하지만,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복지 분야의 15개 사업의 경우는 개정안의 상·하한선 기준보조율로 인해 현행 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기준보조율 범위를 벗어나는 15개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시행규칙 시비보조율	개정(안) 기준보조율
사회복지 (1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30~70%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거리노숙인 보호	100%	

공원환경 (1)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30~70%
문화관광 (3)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30~70%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 매년 5%씩 하향조정, ** 매년 20%씩 하향조정

- 지난해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현행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하한선 조정을 요청함(2021.9.29.~10.4).
-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6.30.~7.20)에서도 7개 자치구(양천, 동대문, 금천, 광진, 송파, 성동, 동작)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시행규칙상 사업별 보조율 분포 기준을 근거로 보조율을 산정하였으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안 제3조제2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시비보조율의 범위를 벗어나 예외조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무색해짐.
-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4조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시비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별 시비보조율을 위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지 않은 채 규칙으로 포괄 재위임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준보조율 위임사항 비교>

지방보조금법	표준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3)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안 제4조, 안 제7조)

- 안 제4조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서울시 차등보조율 기준 규정(시행규칙)>

-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한다.

재정력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안 제7조는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신설 뿐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의 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작년 제출된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2021.9.29~10.4)를 통해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함.
-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과 부담경비의 협의 규정은 기준보조율 지급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써, 지방보조금법과 표준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의 자치구 부담경비의 대한 시와 자치구간의 중요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4) 지방보조금의 공모 및 교부(안 제9조~안 제13조)

- 안 제9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를 신설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조건, 교부 결정 및 통지, 교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히, 안 제11조제2항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을 강화함.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16조~안 제17조)

- 안 제16조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과 함께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함.
- 안 제17조는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상의 규정은 외부 독립된 감사 통제시스템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도입됨.

(6) 성과평가(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시범효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감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현재 사업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유지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구분	평가주체	평가지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부여) - 상대평가: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로 등급배분 - 미흡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표시
심층심의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매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대상: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 심의 -심의내용: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심층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7)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19조~안 제28조)

- 안 제19조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함.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보조금 반납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받음.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보고, ▶홈페이지 공시,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 ▶변동현황이나 중요한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안 제23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4조는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안 제25조는 지방보조금 반환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액의 5%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6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와 지급제한을 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에 있어 제재규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상의 규정들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설 관리규정>

목 적	내 용
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 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신설(안 제16조)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신설(안 제17조)
부정수급 방지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자 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안 제23조) - 부정수급자 명단, 위반행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 신설(안 제24조) - 반환 명령 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신설(안 제25조) - 부정수급자 보조금 교부제한 및 수행배제(안 제26조) <p style="text-align: center;">※ 종전 : 5년 범위 교부제한</p>

- 한편, 안 제28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의회의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함.
-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 체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8)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29조~안 제35조)

- 안 제29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관리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있음.
- 심의대상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추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조례에 현행화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용(안 제31조)>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의 비효율성과 관리 미흡이 지적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심의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심의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지방보조금 관리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을 통해 규율해 왔으나, 독립된 개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현재 총 721건에 3조 7,856억에 달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전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범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규정을 담고 있음.
-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체계적인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누수와 지방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안 제3조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재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미달하는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 설정으로 일부 자치구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됨.
-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종료(2022.6.30.)가 되지 않아 서울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이 폐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계획(2022.6.21.)과 입법예고(2022.6.30.~7.20.)를 시행하였으므로 입법 절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혜미	02-2180-8057

[별표1] <개정 2014.7.3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시행규칙)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 ~ 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 ~ 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 ~ 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 ~ 6,900천원/시설별, 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1,650㎡한도,0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 ~ 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무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 - 대지:1,650㎡한도 - 건물: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사회활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6,800천원/구별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 12백만원/구별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 11,2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 시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 ~ 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50%(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 하천복원비:전액, ◦ 하천내시설: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 5 ~ 30백만원/구별, ◦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 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